



대 구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5546 재물손괴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재화(기소), 남연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변화 담당변호사 함진우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정94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뿌린 오물은 극소량으로 세차만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5,346,49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8. 20:29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1-2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주차방법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전면부에 캔 통조림 잔여물을 뿌려 차량 내부로 스며들게 하여 수리비 5,346,492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뿌린 것은 '꽂치 캔 통조림'의 잔여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인 점, ② 피해자는 위 잔여물이 앞 유리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들어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두 차례 세차를 하고 수회 자동차 내부부품 교환 및 수리를 하는 등 피고인이 던진 오물이 차량 내부에 스며들어 이용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재물상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어떠한 물건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물건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대상물건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대상물건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2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캔 통조림 잔여물을 뿌려 차량 내부로 스며들게 하여 피해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거나 수리비 5,346,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의 오물 투척 행위 이후 촬영된 피해 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0, 1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통조림 잔여물 액체가 피해 차량의 보닛 앞부분과 옆부분,



전면 유리 일부에 뿌려진 형태로 묻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뿌려진 오물의 양이나 묻은 면적이 많거나 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확인 관련)(증거기록 제13쪽)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12시경 자신의 차량에 오물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기계세차를 맡겼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나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차량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운행을 하는데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물 투척 행위로 차량 운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곧바로 세차 후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대로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이 보닛을 타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K(피해자가 대표이사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4471)¹⁾에서 원고(피고인) 측의 L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 차량 모델의 경우 '외부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 유입 경로에 필터 및 프리필터가 설치되어 있어 부품이 파손되거나 일반적인 지 않는 방식의 액체류 분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이 조건이 아닌 한 내부 공기순환장치로 물이나 오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인 사실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해 차량에 묻은 오물의 양이나 면적, 뿌려진 형태, 모양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이 차량 내부로 스며들었다거나 그 냄새가 차량 내부로 들어와 불쾌감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세차비 805,000원을 포함하여 차량 부품 교체 비용 등

1)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2024. 1. 19.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6개 합계 5,346,492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견적서대로 세차를 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일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차량에 오물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바로 세차장으로 가 기계세차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 견적서 기재와 같이 실제 스팀세차, 유리막 코팅 등 고액의 세차를 하였다거나, 후드, 덕트, 공기순환장치, 전면 유리 등의 차량 부품 등을 교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오물이 차량에 묻은 양이나 면적, 비산 형태, 모양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은 세차를 하는 방법으로 쉽게 원상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결국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이 피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가나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도장이나 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가나, 또는 그러한 오물 냄새로 인하여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4-25

재판장 판사 김상윤 _____

 판사 김준희 _____

 판사 김다혜 _____